

강릉 롯데캐슬 시그니처 특별공급 안내문

☑ 특별공급 유형별 배정세대

주택형	총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84A	540	54	54	108	16	38	270	270
84B	245	24	24	49	7	17	121	124
84C	246	25	25	49	7	17	123	123
93A	21	-	2	-	1	-	3	18
93B	12	-	1	-	-	-	1	11
94	6	-	-	-	-	-	-	6
114A	166	-	17	-	5	-	22	144
114B	56	-	6	-	2	-	8	48
P-140	4	-	-	-	-	-	-	4
P-185A	2	-	-	-	-	-	-	2
P-185B	2	-	-	-	-	-	-	2
T-135	2	-	-	-	-	-	-	2
T-136	2	-	-	-	-	-	-	2
T-137	1	-	-	-	-	-	-	1
합계	1,305	103	129	206	38	72	548	757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 제 1호 및 제 8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내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 (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 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람.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조제 2호의 3 및 제 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청약예치금

청약가능 전용면적	예치금액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강원도 강릉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신청가능 타입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84(A, B, C)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84(A, B, C) / 93(A, B) / 94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84(A, B, C) / 93(A, B) / 94 / 114(A, B) / T-135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84(A, B, C) / 93(A, B) / 94 / 114(A, B) / P(140, 185A, 185B) / T(135, 136, 137)

☑ 특별공급 청약신청

구분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일정	8월 2일 (월)	8월 3일 (화)	8월 4일 (수)	8월 10일 (화)	8월 23일(월)~8월 27일(금)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홈 로그인 후 조회가능)	방문접수(예약방문제) 10:00~17: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 • 한국 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 : 강릉시 교동 613-1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확인 제출 공통서류**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청약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개인정보수집안내 (신청자용)
○		인감증명서	본인	-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불가) ※본인 발급용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요망
	○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가입) 내역 발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 (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인터넷청약 (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주민등록표 등본 (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출입국사실 증명원	본인	- 국내거주기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당점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피부양 직계비속	-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발급기간 : 기록대조일은 해당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 30 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 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 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에서 제외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23) 이후 발행분에 한합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당첨자(예비당첨자 포함)의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격확인 서류 미제출 시 계약체결 기간동안 계약체결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자격확인 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공통서류이며, 각각의 특별공급 유형별 추가 자격확인 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공통서류 및 추가 해당 서류의 항목을 확인 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착오(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대표번호 : 1600-1698